

청소년 SNS 규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최형준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변호사

서론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소셜미디어(SNS)를 접하게 되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소셜미디어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을 보다 쉽게, 그리고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중독, 사이버 불링,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범죄 및 유해 콘텐츠 노출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SNS 규제 정책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과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검토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각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미국: 기본권 보호 중심 규제

최근 미국에서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SNS 규제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

나 3월 31일 아칸소 서부연방지방법원¹⁾에서 SNS플랫폼 회사가 모든 계정 소유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 생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셜미디어안전법(Social Media Safety Act)의 위헌성을 인정한 데 이어, 4월 16일에는 오하이오 남부연방지방법원²⁾에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플랫폼의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검증 가능한(verifiable)'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소셜미디어부모통지법(Social Media Parental Notification Act)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 두 사건 모두 구글, 아마존,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무역협회인 NetChoice가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두 법원 모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둔 캘리포니아 주 법령이 청소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으로 결론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청소년 보호 규제 속 표현의 자유에 관한 랜드마크 판례인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³⁾을 인용하였다. Brow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청소년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경우(narrowly tailored to serve a compelling state interest)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목적의 규제일지라도 그 제한이 지나치게 포괄적(seriously overinclusive)이거나 지나치게 선별적(seriously underinclusive)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무분별한 SNS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청소년이 무언가를 듣고 표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아칸소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안전법이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못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전면 배제시키며, 실제로 해를 끼치는 특정 콘텐츠나 기능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SNS 플랫폼 전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연매출 1억 불 미만의 소규모 SNS 플랫폼과 실제 온라인 착취(online exploitation)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유튜브, 왓츠앱, 스냅챗과 같은 대형

1) NetChoice, LLC v. Griffin, 2025 WL 978607 (W.D. Ark. Mar. 31, 2025).

2) NetChoice, LLC v. Yost, 2025 WL 1137485 (S.D. Ohio Apr. 16, 2025).

3) 564 U.S. 786 (2011).



SNS 플랫폼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청소년 보호’라는 소셜미디어부모통지법의 공익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모의 동의가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계정 생성 시 단 한 번 동의한 이후로는 SNS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선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법원 모두 청소년의 SNS 접근 자체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청소년 SNS 규제가 청소년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 다양한 표현 활동에 기여하고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처럼 미국은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청소년 보호 목적의 규제라도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함으로써 정부 개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선량한 목적만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시, 헌법적 정당성 확보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를 고려한 입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5월 14일, 미 상원에서 청소년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통과되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SNS 규제로, 위험성 논란이 있는 연령 확인이나 부모 동의 방식 대신,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하거나 위험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플랫폼의 설계(design features) 자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즉, 청소년의 SNS 접근 자체를 연령 인증이나 부모 동의로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기능 제한 등 설계 자체에 플랫폼 사업자의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하원에서의 표결 결과, 그리고 법안 통과 시 연방정부 대상 소송 제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영국: 사전 예방 원칙 중심 규제

영국은 2021년 9월부터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을 통해 사전 예방 원칙 중심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 설계'로 전환시킨 온라인 보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연령적합설계규약은 18세 미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다음 15가지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1)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설계·개발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2)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3) Age Appropriate Application : 이용자의 연령을 인식할 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아동 이용자에게 해당 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4) Transparency : 아동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약관과 운영정책은 간결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아동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Detrimental Use of Data :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동에 해가 되거나, 기타 법령 및 규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6) Policies and Community Standards : 사업자는 스스로 제정한 약관, 정책 및 커뮤니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7) Default Settings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본 설정은 고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어야 한다.
- (8) Data Minimization : 서비스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 (9) Data Sharing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는 중대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10) Geolocation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치정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다.
- (11) Parental Controls : 서비스에서 보호자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 이용자에게 해당 기능에 대해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모니터링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
- (12) Profiling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서비스 내 프로파일링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다.
- (13) Nudge Techniques : 아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해제하도록 유도·권장하는 넛지(nudge)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4) Connected Toys and Devices : 연결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연령적합설계규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 (15) Online Tools : 아동이 자신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행사하고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15가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령적합설계규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디자인 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은 SNS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보호를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실제로 영국 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주요 SNS 플랫폼들은 연령적합설계규약 시행 이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강화, 유해 콘텐츠 필터링, 맞춤형 광고 제한, 프라이버시 설정 기본값 상향 등 연령적합설계규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⁴⁾

그러나 연령적합설계규약과 같은 사전 예방 원칙 중심의 규제의 경우,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실제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공존한다. 또한, 연령 확인 방식에 대한 기술적 과제와 함께 근본적인 헌법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⁴⁾ Children and Screens: Institute of Digital Media and Child Development (2024, March), UK Age-Appropriate Design Code Impact Assessment, <https://www.childrenandscreens.org/wp-content/uploads/2024/03/Children-and-Screens-UK-AADC-Impact-Assessment.pdf>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SNS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적 안전 조치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미국의 청소년 온라인 안전법에서 미 상원이 SNS 플랫폼 설계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이처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앞서 소개된 NetChoice가 올해 3월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을 모델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연령적합설계규약(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법령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⁵⁾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적은 사전 예방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SNS 플랫폼들은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서비스 정책과 설계를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적합설계규약 방식의 청소년 보호 규제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는 효과적인 규제가 반드시 강제적 사후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NetChoice, LLC v. Bonta, 2025 WL 807961 (N.D. Cal. Mar. 13, 2025).



3. 호주: 청소년 보호 중심 규제

호주는 2024년 11월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연령 제한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청소년 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최초의 입법 사례이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르면,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합리적인 수단으로 차단할 의무를 지는데,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란 (i)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2인 이상의 최종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ii) 최종 사용자가 다른 최종 사용자들과 연결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iii) 최종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면서 (iv)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기타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메타,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유튜브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플랫폼 업계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⁶⁾

6) 박진형 (2025, 3, 5), 호주, 청소년 SNS 금지 대상서 유튜브 제외...특혜 논란, <연합뉴스>, <https://www.yn.co.kr/view/AKR20250305116800084>

미국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과 이용을 원천 차단’을 실현한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SNS 플랫폼들의 책임을 극대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개입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청소년 규제가 호주에서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달리 헌법적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의 헌법에 ‘정치적 소통의 자유(implied right of political communication)’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는 구별된다.⁷⁾ 물론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여 추후 해당 법령이 호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법적 통제도 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호주의 헌법적 구조가 가장 강력한 청소년 SNS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호 절충 규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청소년 보호 목적의 규제라도 엄격한 위헌심사를 적용하여 SNS 플랫폼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그 반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령 제한 규제를 통해 정부 개입과 SNS 플랫폼 책임을 극대화한 호주가 있다. 그리고 두 국가 사이에서 영국은 사전 예방적 설계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보를 접하고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균형 잡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청소년 SNS 규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는 없으나, 작년부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만 14세 미만 아동의

7)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n.d.), Freedom of information, opinion and expression, <https://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freedom-information-opinion-and-expression>

SNS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독성 콘텐츠가 제공되는 SNS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등이다.

그런데 한국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도⁸⁾,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의 온라인 규제를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호주와는 또다른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다룬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청소년 규제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다룬 대표적 사례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섷다운제’ 합헌 판결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0시~6시) 인터넷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섷다운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면서, 청소년보호법상 해당 조치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공익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서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이용만을 제한하긴 하였으나, ‘강제적 섷다운제’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었다면 위헌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한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대해 기본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청소년 SNS 규제 논의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입법 규제와 별개로, SNS 플랫폼 차원에서 자발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영 정책을 개편하였고, 메타코리아 또한 인스타그램 내 10대 계정(Teen Accounts) 체계를 도입하여, 알고리즘 및 이용 시간 제한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대응은 법적 규제 이전에라도 자율적 수단으로서 일정 부분 SNS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9)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결론

청소년 SNS 규제는 단순한 연령 제한 등 기술적 조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 보장, 정부와 SNS 플랫폼 간 책임 분담, 그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문제다.

그런 가운데 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사례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엄격한 기본권 보호, 영국의 사전 예방적 설계,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금지,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의 조화라는 각기 다른 접근법은 각국의 헌법적 전통과 사회적 가치관이 규제 설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시, 몇 가지 핵심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적 정당성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를 통해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해결책과 법적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SNS 규제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상 국제적 공조와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NS 플랫폼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영국과 한국 사례를 통해 충분히 법적 규제 이전에도 자율적 수단으로서 SNS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의 자율성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된다. 앞으로 법적·정치적 상상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